제1593호
2019. 3. 29.(금)

발 행 인 :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 집 인 : 홍보전산과장 김 미 자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 작 구 보

차 례

◎ 공 고

제2019-426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2019-428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2019-42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19-43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제2019-432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작 구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2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하고자하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공납세자에 대해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7호)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10항)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제4조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3. 29. ~ 2019. 4. 19.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행정영향 분석

1)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해 주차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

2)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유공납세자에 대한 주차료 면제 및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법규 마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10항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
1. ~ 6.(생 략)	1. ~ 6.(현행과 같음)
<신 설>	7.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생 략)	8.(현행 제7호와 같음)
제6조(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 ⑨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사용료 등 감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10%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2) ※ 다른감면사유와 중복감면(할인) 불가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131, FAX : 820-9977, E-mail : yji10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감면 불가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신설)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
<신설>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감면 불가	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결제시 사용료 감면(안 제8조)

- 사용료 및 강습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
-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

나. 사용료 반환기준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준용 추가(안 제8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다. 용어 수정(안 제2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라. 문구 및 오탈자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 : 820-9175, FAX : 820-9882, E-mail : euiho8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이 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호 중 “1~3급 장애인”를 “심한 장애인”으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1의 사용료와 강습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별표1의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제 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현행 제3항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9세이상만 18세이하”를 “9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6항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의2 제3항에 “「반환하여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 2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동작구의회 의장이”를 “동작구 의회가”로 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 이라 한다)이란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소년 기본법----------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7호와 제8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청소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4. ---------- 심한 장애인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1의 사용료와 강습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별표1의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감면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상자인 만 9세이상만 18세이하로 한정한다.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9세 이상 만 18세 이하---------.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⑥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② (생 략)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 2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②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 -------- 동작구 의회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시설장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21조(시설장등의 자격요건)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운영이 종료된 청소년시설을 시설목록에서 삭제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대체휴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목록에서 일부 삭제 정비(규칙안 제2조 별표1)

- 명수대 및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이 2018.12.31.자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목록에서 삭제

나.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대체휴무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 : 820-9175, FAX : 820-9882, E-mail : euiho8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이 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 정기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명수대 청소년독서실란 및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
제3조(휴관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 정기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3조(휴관일)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 정기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입과 지출)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자는 청소년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6조(수입과 지출) ① --- 제9조에 따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	제8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 구청장----------.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별표1]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만양로3길 8 (노량진동 325-6)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성대로11길 67 (상도동 247-4)
흑석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서달로13길 17 (흑석동 181-23)
명수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서달로10다길 11 (흑석동 64-3)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사당로13길 50 (사당동 1131-12)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신대방2길 42-10 (신대방동 625-1)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국사봉길2나길 25 (상도동 299-46)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사당로22나길 71 (사당동 316-30)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동작구 사당로23길 57-7 (사당동 산24-17)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동작구 상도로15바길 5 (상도동 산4-4)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1]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만양로3길 8 (노량진동 325-6)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성대로11길 67 (상도동 247-4)
흑석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서달로13길 17 (흑석동 181-23)
<삭 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사당로13길 50 (사당동 1131-12)
<삭 제>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국사봉길2나길 25 (상도동 299-46)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동작구 사당로22나길 71 (사당동 316-30)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동작구 사당로23길 57-7 (사당동 산24-17)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동작구 상도로15바길 5 (상도동 산4-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3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수강료 감면 기준 신설 (제20조제2항제7호)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서 제6호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정책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3층 (대방동, 유한양행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전화 : 820-9222, FAX : 820-1658, E-mail : clare98@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서 제6호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② (생 략)	제20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 설>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6호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현행과 같음)

동작구보 제1593호 동작구



www.dongjak.go.kr

동 작 구